

감정평가상담센터 설치 · 운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는 크게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 공적평가와 경매감정평가, 소송감정평가, 보상감정평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감정평가와 관련한 지문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감정평가업무 및 감정평가 제도 · 이론 등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하여 신속 ·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협회는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감정평가상담센터는 감정평가업무, 감정평가제도, 감정평가이론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질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 센터이며, 이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감정평가업무의 공공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협회가 될 것이다.

상담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 신청,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류상담, 전화상담 등이 있으며, 상담신청에 따른 접수에서부터 처리완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처리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준다.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해 서류로 상담을 신청한 경우 서류상담코너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는 사이버상담(나의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사상담 및 자주하는 질문(FAQ)을 검색하면 상담신청과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으며, 피상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사전예약 접수는 전화(02-521-9436), FAX(02-581-9127)를 이용, 평일 13시부터 15시까지 운영된다.

◎ 상담 안내

1) 상담대상

- 감정평가 업무 및 제도 등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질의
-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질의
- 보상, 담보, 경매평가 등 감정평가 시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질의
- 감정평가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대한 질의
- 감정평가 및 권리구제에 대한 질의 등

2) 상담제기 방법

- 우리 협회에 상담을 제기하는 방법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 서류제출에 의한 서류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이 있음.

3) 상담대상의 예외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협의, 재결 및 이의재결 등의 평가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등 관련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상담센터에서 상담내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상담위원

-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에서 접수하는 상담의 해결을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 이론 등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감정평가사로 위원을 구성

◎ 사이버상담 안내

1) 사이버상담 신청절차 및 열람방법



2) 신청서 작성

- 실명인증(성명, 주민등록번호) 후 신청서 작성
- 비공개 상담의 경우 반드시 신청번호를 알아야 회신 내용 열람 가능
- 결과통보 방식을 SMS, E-mail로 신청한 경우 처리상황 발송

3) 접수 및 처리

-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상담 접수 · 검토 후 15일 이내 회신
- 결과통보 방식을 SMS, E-mail로 신청한 경우 처리상황 발송

4) 열람

- 나의 상담 검색에서 실명인증 후 제출상담 처리결과 열람 가능
- 비공개 상담의 경우 신청번호 입력 후 열람
- 신청번호 분실 시 실명인증 후 재발송(SMS, e-mail) 기능 사용

5) 만족도 조사

- 회신결과 열람 후 해당 상담 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표시
- ※ 상담 사무처리 완료 전 취하가 가능함. 📌